

법무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동반(F-3) 체류자격을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변경(별지 제9호·제11호·제11호의2서식)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구조금의 분할 지급)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동반(F-3)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자격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제6호”로 한다.

6.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제6호”로 한다.

6. 신청인이 법 제2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신청인이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을 당시 지구심의회에 제출했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 경우 “신청인”은 “구조피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유족구조금 · []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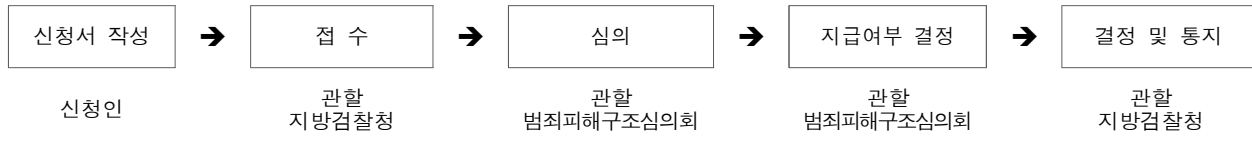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제1순위 유족	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유 []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지급 신청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유 []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처 리 절 차



신청인 첨부서류	1.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제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가.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7. 국제 납세증명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9. 소득금액증명 [] 10.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요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범죄피해	①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		
	② 기존 신체상의 장애 상태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지급 신청 사유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



지급여부 결정



결정 및 통지

신청인

관할
지방검찰청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관할 지방검찰청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6.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가. 신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신청인이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7. 국세 납세증명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9. 소득금액증명 [] 10.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요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①의 란은 그 기입사항이 첨부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2. ②의 란은 이미 신체상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여 중장해로 된 경우에 기입하는 것으로 기입사항이 첨부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피해	기존 구조금 신청 사건번호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망일	년
제1순위 유족	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지급 신청 사유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지급여부 결정	→	결정 및 통지
신청인		관할 지방검찰청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관할 지방검찰청
신청인 첨부서류	1.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제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가.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8. 구조피해자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9.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구조피해자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을 당시 지구심의회에 제출했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7. 국제 납세증명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9. 소득금액증명 [] 10.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요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피해자	가해자		죄명	신청종류	긴급구조금 (내역 및 금액)	심의 및 결정		결정 통지 일자	구상관계 (재산조회 상황)	비고
				성명	재판결과				일자	결과 (내역 및 금액, 분할지급 횟수·주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구조금의 분할 지급) 영</u> <u>제1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서</u>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 <u>이란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u> <u>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u> <u>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u> <u>기준 COFIX”를 말한다.</u>
<u><신 설></u>	<u>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u> <u>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u> <u>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u>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u> <u>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동반</u> <u>(F-3)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자</u> <u>격을 말한다.</u>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 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 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긴급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 금의 지급신청) ① ----- ----- ----- ----- ----- ----- ----- ----- ----- -----

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
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
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
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
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신청인이나 구조피해자가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u>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u>에 기재되어 있는 <u>제1항제2호</u>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u>따른 서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② ----- ----- ----- ----- ----- <u>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u>--- <u>제1항제2호·제6호</u>-----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 ----- ----- ----- ----- ----- -----
---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신청인이 법 제2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신청인이 영주자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항제1호·제6호-----
---. -----
-----.

제7조의2(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유족) 지급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을 당시 지구심의회에 제출했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 경우 “신청인”은 “구조피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한다.